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 부 록



Public Procurement Service





## 국가계약법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 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



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31>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품목조정률 =  $\frac{\text{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text{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9.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9.9, 2009.3.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에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

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12.29>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9.9, 2005.9.8>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2009.3.5>

#### 부 칙 <제104호, 1999. 9. 9>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계예규 2200.04-104-21, 2009.9.21)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을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 칙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회계예규 2200.04-159-12, 2009.9.21)

##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한다.

-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sup>1</sup>:국산기계경비, B<sup>2</sup>: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 다. C : 광산품
- 라. D : 공산품
-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 바. F : 농림·수산물
-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sup>1</sup> : 토목부문, G<sup>2</sup> : 건축부문, G<sup>3</sup>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sup>1</sup>, G<sup>2</sup>, G<sup>3</sup>)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아. H : 산재보험료
-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차. J : 고용보험료
-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G^1, G^2, G^3$ )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 $A_0, B_0, C_0, D_0, E_0, F_0, G_0$ ”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 $A_1, B_1, C_1, D_1, E_1, F_1, G_1$ ”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_0 = A_0 \times \text{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_1 = A_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_0 = \text{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text{변동전 재료비계수} = c + d + e + f$$

$$I_1 = \text{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조정 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text{변동후 계수} = \text{변동전계수} \times \text{지수변동을}$$

다.  $Z_0$  또는  $Z_1$ 의 경우에는  $A_0$ 부터  $G_0$ 까지 또는  $A_1$ 부터  $G_1$ 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_0=(aA_0+cC_0+dD_0+eE_0+fF_0+gG_0)/\text{비목군수}$$

$$Z_1=(aA_1+cC_1+dD_1+eE_1+fF_1+gG_1)/\text{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 \left( a \frac{A_1}{A_0} + b \frac{B_1}{B_0} + c \frac{C_1}{C_0} + d \frac{D_1}{D_0} + e \frac{E_1}{E_0} + f \frac{F_1}{F_0} + g \frac{G_1}{G_0} + h \frac{H_1}{H_0} + i \frac{I_1}{I_0} + j \frac{J_1}{J_0} + k \frac{K_1}{K_0} + l \frac{L_1}{L_0} + m \frac{M_1}{M_0} + \dots + z \frac{Z_1}{Z_0} \right) - 1$$

단,  $z = 1 - (a+b+c+d+e+f+g+h+i+j+k+l+m \dots)$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

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sub>0</sub>, B<sub>0</sub>, C<sub>0</sub>, D<sub>0</sub>, E<sub>0</sub>, F<sub>0</sub>, G<sub>0</sub>, H<sub>0</sub>, I<sub>0</sub>, J<sub>0</sub>, K<sub>0</sub>, L<sub>0</sub>, M<sub>0</sub>, ……Z<sub>0</sub>”에는 직전조정시의 “A<sub>1</sub>, B<sub>1</sub>, C<sub>1</sub>, D<sub>1</sub>, E<sub>1</sub>, F<sub>1</sub>, G<sub>1</sub>, H<sub>1</sub>, I<sub>1</sub>, J<sub>1</sub>, K<sub>1</sub>, L<sub>1</sub>, M<sub>1</sub>, … Z<sub>1</sub>”을, “A<sub>1</sub>, B<sub>1</sub>, C<sub>1</sub>, D<sub>1</sub>, E<sub>1</sub>, F<sub>1</sub>, G<sub>1</sub>, H<sub>1</sub>, I<sub>1</sub>, J<sub>1</sub>, K<sub>1</sub>, L<sub>1</sub>, M<sub>1</sub>, …Z<sub>1</sub>”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

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 $G^1$ ,  $G^2$ ,  $G^3$ )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 $G^2$ )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

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

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  
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  
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  
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  
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  
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회계예규 2200.04-161-7, 2009.9.21)

###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 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 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시 '99년 기계경비 가격적용 관련 회계통첩**


---

(문서번호 회제 2210-591, 1999.03.0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을 산정시 '9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기계경비가격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시달하니 귀부(처, 청, 기관)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품목조정을

- 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 외산 장비 가격과 '99년 품셈상의 국산 외산 장비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나. 외산장비에서 국산장비로 전환된 품목(45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 기준일 당시 외산장비 가격과 '99년 품셈상 국산장비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

2. 지수조정을

- 가. '98. 2. 20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1) 국산장비 적용지수

- 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국산장비중 계약 체결시 또는 직전조정 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국산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만의 평균가격

##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계약체결 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장비의 평균가격

나)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99년 품셈상 외산장비 합계액(신설된 2개품목은 제외)에 '98년도 외산장비에서 '99년도 국산장비로 전환된 장비(45개)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99년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 기준일의 환율이 '99년 연도초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 후 계약체결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나. '98, 2. 20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1) 계약체결 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기계장비의 평균가격

2)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 지수는 '99년 품셈상 기계장비의 평균가격

## 3. 경과조치등

① 이 통첩은 '99년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99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기준일(금차 조정기준일)의 외산장비 가격은 당시 품셈상 외화표시가격에 동일자가 속한 연도초의 환율(연도초 환율과 동일자의 환율이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자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 기계경비 지수산정의 해설

---

- ① 1998년 2월 20일 이전에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외산 및 국산장비로 구분하지 않으며, 1998년 2월 20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외산 및 국산장비로 구분하여 비목군을 분류한다.
  
- ② 환율은 계약 체결시에 적용한 전신환 매도율 또는 매매기준율을 적용  
- 환율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년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년도초 환율대비 5%이상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등락된 환율을 적용
  
- ③ 외산 및 국산장비의 구분은 표준품셈상 기계경비의 산정에서 \$와 원화를 적용하는 것에 따라 분류하며, 표준품셈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비목이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계경비 비목에 포함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회제41301-3216. '97.11.21)

- ④ 입찰공고별 기계경비지수의 산정 비교



입찰 공고일	기계경비지수 산정	장비 대수	비고
'98.2.20일 이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외산 구분없이 전체 장비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평균가격으로 기계경비지수를 산정</li> <li>· 기준시점(계약체결일) ⇒ 기준시점의 표준 품셈상 장비 기종수의 평균가격</li> <li>·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비교시점의 표준 품셈상 장비 기종수의 평균가격</li> <li>* 환율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년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년도초 환율대비 5%이상 등락이 있으면 등락 된 환율을 적용</li> <li>* '98.02.20일 이후 신규 품목 발생시도 국산, 외산장비 구분없이 적용</li> </ul>	대수 상이	회계2210-591 '98.03.08
'98.2.20일 이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장비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평균 가격으로 기계경비지수(B')를 산정</li> <li>· 기준시점(계약체결일) ⇒ 기준시점의 표준 품셈상 국산장비 기종수의 평균가격</li> <li>·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비교시점의 표준 품셈상 국산장비 기종수의 평균가격</li> </ul>	대수 유동적	회계41301-573 '02.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산 장비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평균 가격으로 기계경비지수(B'')를 산정</li> <li>· 기준시점(계약체결일) ⇒ 기준시점의 표준 품셈상 외산장비 기종수의 평균가격</li> <li>·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비교시점의 외산장비 합계액(신설장비 제외) + 전환 된 장비(국산⇒외산)의 당시 품셈의 외화 표시가격 × 환율(5% 변동시 변동된 환율)} ÷ 기준시점의 표준품셈상 외산장비 기종수로 나눈 평균가격</li> <li>* 환율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년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년도초 환율대비 5%이 상 등락이 있으면 등락 된 환율을 적용</li> </ul>	대수 동일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관련 회계통칙

---

(문서번호 회제 41301-2543, 회신일자 1998.08.2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변동 기간요건 성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에 다음사항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및 회원사의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종전6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 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종전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종전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직전 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종전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

## 지수조정률 산출관련 회계통칙

---

(문서번호 회제 41301-805, 1998.04.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K) 산출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이견 대립 등으로 계약업무 집행에 일부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협회(기관) 및 회원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수변동율(계약 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을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

## 기업의 자금난 완화등을 위한 회계통칙

---

(문서번호 회계 41301-372, 1998.04.02)

### 1. 기성 및 준공대가지급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에게 30일 단위로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 제출 →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기성검사원에 따라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공사기성 부분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

\* 약식기성검사신청시 기성검사원 첨부서류 :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그 대가지급을 위한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지급기한 이전이라도 대가를 지급.

## 2. 선금지급

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에 대한 선금지급에 있어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의무적 선금지급비율(20~50%)를 준수 하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시행에 관한 통첩(회계45101-1303, '95.8.9)” 제6호 “가”목으로 '95. 7. 6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중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속 선금지급을 배제토록 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98년도 이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에 대하여는 낙찰율에 관계없이 선금지급 배제대상에서 제외

## 3. 공동도급계약 이행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부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도업체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그 결과 공사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이 공사계약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정당업자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신속히 수행.

####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나. 위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등이 변동된 때에는 가능한 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여 운용.

---

##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관련 회계통칙

---

(문서번호 회계 41301-177, 1998.01.23)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에 기인한 수입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기간 연장 및 관급자재 대체에 관한 회계통칙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요건(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중전5)이상 증감요건 충족)을 준수할 경우 계약이행이 어려운 유류등 특수한 품목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함.

- 다.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경비(공사에 한함)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의 지수는 계약체결 시점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비교시점의 지수는 물가변동 당시의 동가격 평균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중 외화로 표시된 기계가격의 경우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중 환율 변동이 3%(종전5%)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 2. 계약기간 연장 및 관급자재 대체

- 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최근의 환율급등, 은행의 L/C개설정지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올 경우 계약목적물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나.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특히 환율상승등으로 인하여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음.



---

## 물가변동적용등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

(문서번호 재무부회제 45101-888, 1993.08.20)

최근 일부관서에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거나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 각종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귀 부처 및 소속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적절한 회계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 산정은 예산회계법령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대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품목 또는 비목(예 : 노임)만 한정하여 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 경쟁입찰시 예산회계법령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방법에 대하여 공고의 목적인 경쟁성, 공정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방법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1459, 1988.7.1)을 기 시달한 바 있으나, 관련법정단체에의 통보가 잘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동 회계통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

---

##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

(회계제도과-2042, 2005.11.7)

1.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통첩 시행에 따라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합니다.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1)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 (2)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 (1)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용 소모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2) “(1)”에 의한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3) “(1)”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위 “가. 및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 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 (2)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 “(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유세율 인상분(위 “나”에 의하여 조정된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끝.

# 지방계약법

## 1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2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개정 2009.1.1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8.12.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7.9.2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7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7.10.5>

$$1. \text{ 품목조정률} = \frac{\text{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text{계약금액}}$$

$$2. \text{ 등락폭} = \text{계약단가} \times \text{등락률}$$

$$3. \text{ 등락률} = \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8.3.4, 2009.8.7>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 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 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9.8.7>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 조정률과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및 제73조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조정률)**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

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물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sup>1</sup>: 토목부문, G<sup>2</sup>: 건축부문, G<sup>3</sup>: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sup>1</sup>, G<sup>2</sup>, G<sup>3</sup>)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G^1, G^2, G^3$ )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 $A_0, B_0, C_0, D_0, E_0, F_0, G_0$ ”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 $A_1, B_1, C_1, D_1, E_1, F_1, G_1$ ”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_0 = A_0 \times \text{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_1 = A_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_0 = \text{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text{변동전 재료비계수} = c+d+e+f$$

$$I_1 = \text{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조정}$$

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률

다. Z<sub>0</sub> 또는 Z<sub>1</sub>의 경우에는 A<sub>0</sub>부터 G<sub>0</sub>까지 또는 A<sub>1</sub>부터 G<sub>1</sub>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_0 = (aA_0+cC_0+dD_0+eE_0+fF_0+gG_0)/\text{비목군수}$$

$$Z_1 = (aA_1+cC_1+dD_1+eE_1+fF_1+gG_1)/\text{비목군수}$$

**제4조(조정률의 산출)** ①지수조정률(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 \left( a \frac{A_1}{A_0} + b \frac{B_1}{B_0} + c \frac{C_1}{C_0} + d \frac{D_1}{D_0} + e \frac{E_1}{E_0} + f \frac{F_1}{F_0} + g \frac{G_1}{G_0} + h \frac{H_1}{H_0} + i \frac{I_1}{I_0} + j \frac{J_1}{J_0} + k \frac{K_1}{K_0} + l \frac{L_1}{L_0} + m \frac{M_1}{M_0} + \dots + z \frac{Z_1}{Z_0} \right) - 1$$

단, z = 1 - (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3조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서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률은 제4조제1항의 산식중 “ $A_0, B_0, C_0, D_0, E_0, F_0, G_0, H_0, I_0, J_0, K_0, L_0, M_0, \dots Z_0$ ”에는 직전조정시의 “ $A_1, B_1, C_1, D_1, E_1, F_1, G_1, H_1, I_1, J_1, K_1, L_1, M_1, \dots Z_1$ ”을, “ $A_1, B_1, C_1, D_1, E_1, F_1, G_1, H_1, I_1, J_1, K_1, L_1, M_1, \dots Z_1$ ”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3조제3호에 따른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건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3조제3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G^1$ ,  $G^2$ ,  $G^3$ )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 $G^2$ )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해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6조(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조(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73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하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 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 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 다. 제4조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일 부터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일 까지의 해당 특정규격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출한다.

##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2008.7.7)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바에 의한다.
-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마. 발주기관은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 및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항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가 내지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

### 1 일반공사의 평균노임

년도	노임 발표일	적용 기간	공사 직종	광전자 직종	문화재 직종	원자력 직종	기타 직종
2009	'09.09.01	'09.09.01-'09.12.31	104,427	153,140	129,920	134,140	108,805
	'09.01.01	'09.01.01-'09.08.31	104,424	149,909	133,282	134,825	108,566
2008	'08.09.01	'08.09.01-'08.12.31	101,523	144,056	131,492	134,111	104,740
	'08.01.01	'08.01.01-'08.08.31	97,471	137,756	125,710	132,573	102,386
2007	'07.09.01	'07.09.01-'07.12.31	94,679	130,523	124,197	127,568	100,574
	'07.01.01	'07.01.01-'07.08.31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2006	'06.09.01	'06.09.01-'06.12.31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06.01.01	'06.01.01-'06.08.31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	'05.09.01	'05.09.01-'05.12.31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05.01.01	'05.01.01-'05.08.31	87,197	120,269	118,897	103,397	91,415
2004	'04. 08.31	'04.09.01-'04.12.31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03. 12.30	'04.01.01-'04.08.31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2003	'03. 08.13	'03.08.14-'03.12.31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02. 12.17	'02.12.17-'03.08.12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	'02. 08.14	'02.08.14-'02.12.16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02. 01.01	'02.01.01-'02.08.13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	'01. 09.01	'01.09.01-'01.12.31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01. 01.01	'01.01.01-'01.08.31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	'00. 09.01	'00.09.01-'00.12.31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00. 01.01	'00.01.01-'00.08.31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 2

## 감리공사의 감리원 임금

적용 년도	노 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검 측	수 석	감리사	감리사보	
	발표일	감리원	감리원	감리원	감리원	감리원	감리사			
1994	1994.01.01	90,300	70,900	51,300	37,100	-	-	-	-	
	1994.11.17	94,800	74,400	55,800	39,000	-				
1995	1995.01.24	107,652	78,449	63,339	43,855	0	0	0	0	
1996	1995.12.23	132,791	102,714	84,115	43,855	0	0	0	0	
1997	1997.01.10	154,863	118,996	101,267	77,195	0	0	0	0	
1998	1997.12.29	158,779	124,054	106,088	83,054	60,249	0	0	0	
1999	1998.12.31	155,637	124,025	103,036	83,228	55,830	0	0	0	
2000	1999.12.28	149,506	119,455	97,988	78,697	55,311	0	0	0	
2001	2000.12.29	156,405	124,474	104,964	82,615	63,740	0	0	0	
	종 전 5 단 계						현 행 3 단 계			
2002	2001.12.28	159,665	121,406	104,613	88,448	73,765	176,336	141,295	107,875	
2003	2002.12.26	173,691	124,371	111,079	90,730	88,017	190,865	147,327	115,435	
2004	2003.12.23	181,565	137,494	120,532	95,843	95,118	198,606	156,071	125,577	
2005	2004.11.22	209,018	153,971	138,094	115,565	109,664	228,025	177,385	142,384	
2006	2005.12.01	222,965	163,523	141,167	117,860	116,638	242,976	188,754	150,983	
2007	2006.12.22	235,130	171,130	146,371	130,066	122,959	254,954	200,535	159,210	
2008	2007.12.27	245,291	178,291	158,288	136,427	128,381	265,716	209,020	166,376	
2009	2008.12.29	252,964	179,011	158,762	142,768	132,194	272,330	215,617	172,556	



## 3

## 건설기계 평균가격 및 적용환율

(※ 2007.1.1이후 입찰분 공사에 대하여는 기계손료 적용하여야 함.)

년도	총규격 수		평균가격 (천원)	기준일	적용환율 (\$당)	비고
2009	국산	267	109,565	2009.1.2	1257.5	기준 환율
	외산	371	595,296			
	전체	638	392,020			
2008	국산	264	109,800	2008.1.2	938.2	기준 환율
	외산	371	444,141			
	전체	635	305,139			
2007	국산	219	116,174	2007.1.2	929.6	기준 환율
	외산	378	395,110			
	전체	597	292,786			
2006	국산	214	100,028	2006.1.3	1,013.0	"
	외산	379	328,354			
	전체	593	245,956			
2005	국산	208	100,543	2005.1.2	1,035.6	기준 환율
	외산	379	335,680			
	전체	587	252,360			
2004	국산	201	74,376	2004.1.2	1,194.3	"
	외산	379	387,121			
	전체	580	278,738			
2003	국산	193	76,073	2003.1.2	1,187.8	"
	외산	377	228,801			
	전체	570	177,088			
2002	국산	193	77,756	2002.1.2	1,314.6	"
	외산	376	251,956			
	전체	569	192,869			

## 4

## 년도별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기본분류 지수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05=100)						
항목명1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물	수입공산품	비 고
단위	2005=100	2005=100	2005=100	2005=100	2005=100	
2004/10	102.20	96.40	99.60	97.40	110.17	
2004/11	102.20	96.40	101.50	94.80	106.66	
2004/12	99.50	95.30	101.50	94.50	102.11	
2005/01	98.90	99.70	100.70	101.60	102.95	
2005/02	100.20	99.70	100.70	105.90	102.00	
2005/03	99.70	100.00	98.10	106.30	101.49	
2005/04	99.70	100.40	98.10	106.00	100.99	
2005/05	100.10	99.60	99.40	101.80	99.07	
2005/06	100.10	99.00	98.90	96.80	98.26	
2005/07	100.40	99.60	100.00	98.90	99.75	
2005/08	101.30	99.90	100.00	100.00	99.35	
2005/09	101.60	100.50	100.00	100.40	100.47	
2005/10	101.40	101.10	100.30	95.70	100.29	
2005/11	98.40	100.70	101.90	91.50	98.53	
2005/12	98.20	99.90	101.90	94.90	96.85	
2006/01	98.70	99.70	105.30	100.90	94.52	
2006/02	96.50	99.70	105.40	101.90	93.48	
2006/03	95.80	99.50	105.40	101.30	93.56	
2006/04	95.80	99.80	105.50	98.70	93.25	
2006/05	95.80	100.40	105.70	97.20	94.88	
2006/06	95.80	100.50	105.50	93.50	95.60	
2006/07	95.80	100.70	108.10	93.40	96.02	
2006/08	98.90	101.20	108.10	99.30	97.90	
2006/09	99.30	101.30	111.40	101.00	96.82	
2006/10	99.20	100.40	111.50	92.20	96.65	
2006/11	101.30	99.60	108.70	93.90	95.03	
2006/12	101.10	99.30	108.50	97.00	94.91	
2007/01	102.20	98.90	109.10	100.30	95.37	
2007/02	99.40	98.60	109.40	104.90	96.55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05=100)						
항목명1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물	수입공산품	비 고
단위	2005=100	2005=100	2005=100	2005=100	2005=100	
2007/03	103.30	99.40	108.50	102.90	99.07	
2007/04	104.20	100.40	108.50	100.90	98.78	
2007/05	102.10	101.20	110.00	99.10	99.07	
2007/06	102.10	101.40	110.00	98.20	98.08	
2007/07	102.90	101.40	110.10	97.50	96.60	
2007/08	105.10	101.40	110.30	97.60	97.94	
2007/09	105.90	101.30	114.00	104.20	98.49	
2007/10	110.10	101.80	114.10	99.10	98.33	
2007/11	110.50	102.60	115.30	98.10	100.30	
2007/12	110.50	103.20	115.40	99.40	102.06	
2008/01	111.90	103.90	114.30	101.00	104.65	
2008/02	109.20	105.10	114.40	104.70	106.91	
2008/03	109.20	107.40	114.60	101.40	114.67	
2008/04	114.20	110.60	114.70	101.90	117.51	
2008/05	116.00	113.90	114.70	99.40	125.56	
2008/06	116.00	116.80	114.80	97.00	126.05	
2008/07	114.50	119.60	115.20	98.50	126.83	
2008/08	114.90	118.70	115.40	103.30	125.17	
2008/09	117.10	118.30	115.40	99.00	132.25	
2008/10	117.10	118.00	116.50	97.60	144.64	
2008/11	119.30	113.50	119.40	104.30	141.55	
2008/12	122.10	110.40	121.60	107.30	137.37	
2009/01	119.10	109.40	120.30	115.20	133.95	
2009/02	122.60	110.60	120.20	114.10	140.61	
2009/03	122.90	111.20	120.40	116.30	140.98	
2009/04	122.90	111.10	120.10	118.30	129.53	
2009/05	122.80	109.80	119.60	118.00	123.27	
2009/06	124.30	110.00	120.40	106.70	125.92	
2009/07	124.60	111.00	126.80	112.80	127.78	
2009/08	125.00	112.10	126.90	109.50	128.51	
2009/09	126.00	112.50	126.90	105.00	123.60	
2009/10	125.50	111.60	127.5	97.70		

주1) 상기지수는 2008년 6월부터 기준년도=2005년도(100)으로 발표된 지수임

주2) 2003년 12월 26일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물가변동분 부터는 당해  
시점 이전 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수를 적용

## 5

## 년도별 실적공사비 지수

## ○ 2004년 상반기 / 2004년 하반기

공종	2004년 상반기				2004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137	111	5,527,025	49,793	3.65
건축부분	73	67	36,441,207	543,898	98	67	38,293,517	571,545	5.08
기계부분	36	33	1,616,778	48,993	50	33	1,674,039	50,728	3.54

## ○ 2004년 상반기 / 2005년 상반기

공종	2004년 상반기				2005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151	111	5,542,166	49,929	3.93
건축부분	73	67	36,441,207	543,898	112	67	37,748,260	563,406	3.59
기계부분	36	33	1,743,659	52,838	77	33	1,914,383	58,011	9.79

## ○ 2004년 상반기 / 2005년 하반기

공종	2004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240	111	5,574,420	50,220	4.54
건축부분	73	67	36,441,207	543,898	184	67	36,348,097	542,508	-0.26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111	32	1,748,063	54,626	10.25

## ○ 2004년 상반기 / 2006년 상반기

공종	2004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322	111	5,513,834	49,674	3.40
건축부분	73	66	36,429,050	551,955	238	66	34,982,830	530,042	-3.97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143	32	1,744,017	54,500	9.99

○ 2004년 상반기 / 2006년 하반기

공종	2004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440	111	5,597,895	50,431	4.98
건축부분	73	66	36,429,050	551,955	335	66	34,923,162	529,138	-4.13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205	32	1,794,149	56,067	13.16

○ 2004년 상반기 / 2007년 상반기

공종	2004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470	111	5,455,206	49,146	2.30
건축부분	73	66	36,429,050	551,955	359	66	32,847,762	497,693	-9.83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231	32	1,559,066	48,720	-1.67

○ 2004년 상반기 / 2007년 8월 13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7년 8월 1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505	111	5,401,820	48,665	1.30
건축부분	73	66	36,429,050	551,955	381	66	33,266,853	504,043	-8.68
기계부분	36	29	1,448,876	49,961	243	29	1,300,459	44,843	-10.24

○ 2004년 상반기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516	111	5,401,820	48,665	1.30
건축부분	73	66	36,429,050	551,955	381	66	33,266,853	504,043	-8.68
기계부분	36	29	1,448,876	49,961	243	29	1,300,459	44,843	-10.24

○ 2004년 상반기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516	111	5,401,820	48,665	1.30
건축부분	73	66	2,537,184	38,442	381	66	2,423,684	36,722	-4.47
기계부분	36	29	1,448,876	49,961	243	29	1,300,459	44,843	-10.24

○ 2004년 상반기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545	111	5,330,176	48,019	-0.04
건축부분	73	66	2,537,184	38,442	402	66	2,419,886	36,664	-4.63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258	32	1,476,884	46,152	-6.85

○ 2004년 상반기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550	111	5,330,176	48,019	-0.04
건축부분	73	66	2,537,184	38,442	402	66	2,419,886	36,664	-4.63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258	32	1,476,884	46,152	-6.85

○ 2004년 상반기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689	111	5,651,365	50,913	5.98
건축부분	73	66	2,537,184	38,442	487	66	2,473,890	37,483	-2.49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302	32	1,541,442	48,170	-2.78

○ 2004년 상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716	111	5,605,775	50,502	5.12
건축부분	73	66	2,537,184	38,442	511	66	2,491,162	37,744	-1.82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310	32	1,609,503	50,296	1.51

○ 2004년 상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4년 상반기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11	111	5,332,476	48,040	763	111	5,491,444	49,472	2.98
건축부분	73	66	2,537,184	38,442	534	66	2,457,739	37,238	-3.13
기계부분	36	32	1,585,563	49,548	310	32	1,584,101	49,503	-0.09

○ 2004년 하반기 / 2005년 상반기

공종	2004년 하반기				2005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151	137	6,319,876	46,130	0.44
건축부분	98	98	39,737,286	405,482	112	98	39,218,382	400,187	-1.31
기계부분	50	37	1,910,809	51,643	77	37	1,984,677	53,639	3.86

○ 2004년 하반기 / 2005년 하반기

공종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240	137	6,352,616	46,369	0.96
건축부분	98	98	39,737,286	405,482	184	98	37,792,061	385,633	-4.90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111	36	1,819,628	50,545	4.30

○ 2004년 하반기 / 2006년 상반기

공종	2004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322	137	6,284,049	45,868	-0.13
건축부분	98	97	39,724,606	409,532	238	97	36,411,996	375,381	-8.34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143	36	1,819,838	50,551	4.31

○ 2004년 하반기 / 2006년 하반기

공종	2004년 하반기				2006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440	137	6,379,941	46,568	1.39
건축부분	98	97	39,724,606	409,532	335	97	36,397,904	375,236	-8.37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205	36	1,870,073	51,946	7.19

○ 2004년 하반기 / 2007년 상반기

공종	2004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440	137	6,214,689	45,362	-1.23
건축부분	98	97	39,724,606	409,532	335	97	34,278,138	353,382	-13.71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205	36	1,572,509	43,680	-9.87

○ 2004년 하반기 / 2007년 8월 13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7년 8월 1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505	137	6,187,437	45,163	-1.67
건축부분	98	97	39,724,606	409,532	381	97	34,663,806	357,358	-12.74
기계부분	50	33	1,602,547	48,562	243	33	1,247,005	37,788	-22.19



○ 2004년 하반기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516	137	6,187,437	45,163	-1.67
건축부분	98	97	39,724,606	409,532	381	97	34,663,806	357,358	-12.74
기계부분	50	33	1,602,547	48,562	243	33	1,247,005	37,788	-22.19

○ 2004년 하반기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516	137	6,187,437	45,163	-1.67
건축부분	98	97	4,106,616	42,336	381	97	3,820,637	39,388	-6.96
기계부분	50	33	1,602,547	48,562	243	33	1,247,005	37,788	-22.19

○ 2004년 하반기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545	137	6,115,251	44,636	-2.81
건축부분	98	97	4,106,616	42,336	402	97	3,823,227	39,414	-6.9%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258	36	1,394,919	38,747	-20.05

○ 2004년 하반기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550	137	6,115,251	44,636	-2.81
건축부분	98	97	4,106,616	42,336	402	97	3,823,227	39,414	-6.9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258	36	1,394,919	38,747	-20.05

○ 2004년 하반기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689	137	6,448,593	47,070	2.49
건축부분	98	97	4,106,616	42,336	487	97	3,952,405	40,746	-3.76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302	36	1,452,798	40,355	-16.73

○ 2004년 하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716	137	6,428,962	46,926	2.17
건축부분	98	97	4,106,616	42,336	511	97	3,978,269	41,013	-3.13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310	36	1,514,654	42,073	-13.18

○ 2004년 하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4년 하반기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37	137	6,292,170	45,928	763	137	6,289,900	45,911	-0.04
건축부분	98	97	4,106,616	42,336	534	97	3,963,851	40,864	-3.48
기계부분	50	36	1,744,661	48,462	310	36	1,490,786	41,410	-14.55

○ 2005년 상반기 / 2005년 하반기

공종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240	151	7,016,806	46,468	0.63
건축부분	112	112	39,525,846	352,909	184	112	38,098,880	340,168	-3.61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111	76	3,211,235	42,253	0.33

○ 2005년 상반기 / 2006년 상반기

공종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322	151	6,940,155	45,961	-0.46
건축부분	112	111	39,512,937	355,972	238	111	36,718,135	330,794	-7.07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143	76	3,225,261	42,437	0.77

○ 2005년 상반기 / 2006년 하반기

공종	2005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440	151	7,051,113	46,696	1.13
건축부분	112	111	39,512,937	355,972	335	111	36,709,783	330,718	-7.09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205	76	3,316,552	43,638	3.62

○ 2005년 상반기 / 2007년 상반기

공종	2005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470	151	6,880,786	45,568	-1.31
건축부분	112	111	39,512,937	355,972	359	111	34,586,324	311,588	-12.47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231	76	3,070,347	40,399	-4.07

○ 2005년 상반기 / 2007년 8월 13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7년 8월 1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505	151	6,865,372	45,466	-1.54
건축부분	112	111	39,512,937	355,972	381	111	34,963,822	314,989	-11.51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243	76	3,004,743	39,536	-6.12

○ 2005년 상반기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516	151	6,865,372	45,466	-1.54
건축부분	112	111	39,512,937	355,972	381	111	34,963,822	314,989	-11.51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243	76	3,004,743	39,536	-6.12

○ 2005년 상반기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516	151	6,865,372	45,466	-1.54
건축부분	112	111	4,417,267	39,795	381	111	4,120,653	37,123	-6.71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243	76	3,004,743	39,536	-6.12

○ 2005년 상반기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545	151	6,798,570	45,023	-2.49
건축부분	112	111	4,417,267	39,795	402	111	4,117,248	37,092	-6.79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258	76	2,982,994	39,249	-6.8

○ 2005년 상반기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550	151	6,798,570	45,023	-2.49
건축부분	112	111	4,417,267	39,795	402	111	4,117,248	37,092	-6.79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258	76	2,982,994	39,249	-6.8

○ 2005년 상반기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689	151	7,172,297	47,498	2.87
건축부분	112	111	4,417,267	39,795	487	111	4,252,790	38,313	-3.72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302	76	3,166,966	41,670	-1.05

○ 2005년 상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716	151	7,167,709	47,468	2.8
건축부분	112	111	4,417,267	39,795	511	111	4,289,316	38,642	-2.9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310	76	3,284,338	43,214	2.61

○ 2005년 상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5년 상반기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151	151	6,972,492	46,175	763	151	7,008,094	46,411	0.51
건축부분	112	111	4,417,267	39,795	534	111	4,268,852	38,458	-3.36
기계부분	77	76	3,200,595	42,113	310	76	3,257,981	42,868	1.79

○ 2005년 하반기 / 2006년 상반기

공종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40	9,852,501	41,052	322	240	9,748,149	40,617	-1.06
건축부분	184	183	38,806,810	212,059	238	183	37,436,093	204,568	-3.53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143	109	3,483,302	31,956	0.35

○ 2005년 하반기 / 2006년 하반기

공종	2005년 하반기				2006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40	9,852,501	41,052	440	240	9,905,083	41,271	0.53
건축부분	184	183	38,806,810	212,059	335	183	37,449,642	204,642	-3.50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205	109	3,579,635	32,840	3.12

○ 2005년 하반기 / 2007년 상반기

공종	2005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40	9,852,501	41,052	470	240	9,711,713	40,465	-1.43
건축부분	184	183	38,806,810	212,059	359	183	35,319,395	193,002	-8.99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231	109	3,339,588	30,638	-3.79

○ 2005년 하반기 / 2007년 8월 13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7년 8월 1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40	9,852,501	41,052	505	240	9,724,663	40,519	-1.30
건축부분	184	183	38,806,810	212,059	381	183	35,701,737	195,091	-8.00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243	109	3,283,133	30,120	-5.42

○ 2005년 하반기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37	9,801,033	41,354	516	237	9,692,394	40,896	-1.11
건축부분	184	183	38,806,810	212,059	381	183	35,701,737	195,091	-8.00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243	109	3,283,133	30,120	-5.42

○ 2005년 하반기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37	9,801,033	41,354	516	237	9,692,394	40,896	-1.11
건축부분	184	183	5,047,077	27,579	381	183	4,858,568	26,549	-3.73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243	109	3,283,133	30,120	-5.42

○ 2005년 하반기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37	9,801,033	41,354	545	237	9,641,338	40,680	-1.63
건축부분	184	183	5,047,077	27,579	402	183	4,865,082	26,585	-3.6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258	109	3,267,074	29,973	-5.88

○ 2005년 하반기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31	9,755,544	42,231	550	231	9,619,580	41,643	-1.39
건축부분	184	183	5,047,077	27,579	402	183	4,865,082	26,585	-3.6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258	109	3,267,074	29,973	-5.88

○ 2005년 하반기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30	9,650,436	41,958	689	230	10,145,674	44,111	5.13
건축부분	184	183	5,047,077	27,579	487	183	5,046,851	27,578	0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302	109	3,465,981	31,797	-0.15

○ 2005년 하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8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38	9,821,681	41,267	716	238	10,216,722	42,927	4.02
건축부분	184	183	5,047,077	27,579	511	183	5,101,138	27,875	1.07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310	109	3,585,316	32,892	3.28

○ 2005년 하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5년 하반기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240	238	9,821,681	41,267	763	238	9,911,656	41,645	0.92
건축부분	184	183	5,047,077	27,579	534	183	5,074,582	27,729	0.54
기계부분	111	109	3,471,321	31,846	310	109	3,554,557	32,610	2.4

○ 2006년 상반기 / 2006년 하반기

공종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22	12,070,794	37,486	440	322	12,260,216	38,075	1.57
건축부분	238	238	38,321,124	161,013	335	238	38,344,833	161,112	0.06
기계부분	143	143	5,403,246	37,784	205	143	5,550,577	38,815	2.73

○ 2006년 상반기 / 2007년 상반기

공종	2006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22	12,070,794	37,486	470	322	12,029,830	37,359	-0.34
건축부분	238	238	38,321,124	161,013	359	238	36,212,089	152,151	-5.50
기계부분	143	143	5,403,246	37,784	231	143	5,220,864	36,509	-3.37



○ 2006년 상반기 / 2007년 8월 13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7년 8월 1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22	12,070,794	37,486	505	322	12,051,677	37,427	-0.16
건축부분	238	238	38,321,124	161,013	381	238	36,588,816	153,734	-4.52
기계부분	143	142	5,246,754	36,948	243	142	5,020,661	35,356	-4.31

○ 2006년 상반기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18	11,989,065	37,701	516	318	12,003,493	37,746	0.12
건축부분	238	238	38,321,124	161,013	381	238	36,588,816	153,734	-4.52
기계부분	143	142	5,246,754	36,948	243	142	5,020,661	35,356	-4.31

○ 2006년 상반기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18	11,989,065	37,701	516	318	12,003,493	37,746	0.12
건축부분	238	238	5,849,948	24,579	381	238	5,745,647	24,141	-1.78
기계부분	143	142	5,246,754	36,948	243	142	5,020,661	35,356	-4.31

○ 2006년 상반기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18	11,989,065	37,701	545	318	11,945,698	37,565	-0.36
건축부분	238	238	5,849,948	24,579	402	238	5,754,699	24,179	-1.63
기계부분	143	143	5,403,246	37,784	258	143	5,153,278	36,036	-4.63

○ 2006년 상반기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12	11,943,961	38,281	550	312	11,872,699	38,053	-0.6
건축부분	238	238	5,849,948	24,579	402	238	5,754,699	24,179	-1.63
기계부분	143	143	5,403,246	37,784	258	143	5,153,278	36,036	-4.63

○ 2006년 상반기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11	11,839,610	38,069	689	311	12,663,220	40,717	6.96
건축부분	238	238	5,849,948	24,579	487	238	5,985,133	25,147	2.31
기계부분	143	143	5,403,246	37,784	302	143	5,487,152	38,371	1.55

○ 2006년 상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8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19	12,008,301	37,643	716	319	12,711,230	39,847	5.86
건축부분	238	238	5,849,948	24,579	511	238	6,045,185	25,399	3.34
기계부분	143	143	5,403,246	37,784	310	143	5,684,082	39,748	5.2

○ 2006년 상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6년 상반기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322	319	12,008,301	37,643	763	319	12,321,059	38,624	2.61
건축부분	238	238	5,849,948	24,579	534	238	5,990,316	25,169	2.4
기계부분	143	143	5,403,246	37,784	310	143	5,614,644	39,263	3.91

○ 2006년 하반기 / 2007년 상반기

공종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40	16,939,334	38,498	470	440	16,722,881	38,006	-1.28
건축부분	335	335	43,501,374	129,854	359	335	41,391,913	123,557	-4.85
기계부분	216	216	8,930,230	41,343	231	216	8,539,480	39,534	-4.38

○ 2006년 하반기 / 2007년 8월 13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7년 8월 1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40	16,939,334	38,498	505	440	16,808,831	38,201	-0.77
건축부분	335	335	43,501,374	129,854	381	335	41,825,583	124,852	-3.85
기계부분	216	207	8,207,794	39,651	243	207	7,796,816	37,665	-5.01

○ 2006년 하반기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36	16,856,718	38,662	516	436	16,765,937	38,453	-0.54
건축부분	335	335	43,501,374	129,854	381	335	41,825,583	124,852	-3.85
기계부분	216	207	8,207,794	39,651	243	207	7,796,816	37,665	-5.01

○ 2006년 하반기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36	16,856,718	38,662	516	436	16,765,937	38,453	-0.54
건축부분	335	335	11,107,165	33,155	381	335	10,982,414	32,783	-1.12
기계부분	216	207	8,207,794	39,651	243	207	7,796,816	37,665	-5.01

○ 2006년 하반기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36	16,856,718	38,662	545	436	16,586,861	38,043	-1.6
건축부분	335	335	11,107,165	33,155	402	335	11,072,889	33,053	-0.31
기계부분	216	216	8,930,230	41,343	258	216	8,525,181	39,468	-4.54

○ 2006년 하반기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28	16,798,053	39,247	505	428	16,502,286	38,556	-1.76
건축부분	335	335	11,107,165	33,155	402	335	11,072,889	33,053	-0.31
기계부분	216	216	8,930,230	41,343	258	216	8,525,181	39,468	-4.54

○ 2006년 하반기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27	16,692,591	39,092	689	427	17,637,101	41,304	5.66
건축부분	335	335	11,107,165	33,155	487	335	11,717,399	34,977	5.5
기계부분	216	216	8,930,230	41,343	302	216	9,120,636	42,225	2.13

○ 2006년 하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37	16,876,158	38,618	716	437	17,821,563	40,781	5.6
건축부분	335	335	11,107,165	33,155	511	335	12,041,978	35,946	8.42
기계부분	216	216	8,930,230	41,343	310	216	9,392,433	43,483	5.18

○ 2006년 하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6년 하반기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40	437	16,876,158	38,618	763	437	17,282,513	39,548	2.41
건축부분	335	335	11,107,165	33,155	534	335	11,877,235	35,454	6.93
기계부분	216	216	8,930,230	41,343	310	216	9,312,116	43,111	4.28

○ 2007년 상반기 / 2007년 8월 13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7년 8월 1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70	19,202,342	40,856	505	470	19,334,338	41,136	0.69
건축부분	359	359	41,712,537	116,190	381	359	42,152,684	117,416	1.06
기계부분	231	222	8,165,728	36,782	243	222	8,161,120	36,761	-0.06

○ 2007년 상반기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66	19,119,851	41,029	516	466	19,291,444	41,397	0.90
건축부분	359	359	41,712,537	116,190	381	359	42,152,684	117,416	1.06
기계부분	231	222	8,165,728	36,782	243	222	8,161,120	36,761	-0.06

○ 2007년 상반기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66	19,119,851	41,029	516	466	19,291,444	41,397	0.90
건축부분	359	359	11,280,217	31,421	381	359	11,309,515	31,502	0.26
기계부분	231	222	8,165,728	36,782	243	222	8,161,120	36,761	-0.06

○ 2007년 상반기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66	19,119,851	41,029	545	466	19,165,559	41,127	0.24
건축부분	359	359	11,280,217	31,421	402	359	11,405,273	31,769	1.11
기계부분	231	231	8,878,479	38,434	258	231	8,900,445	38,530	0.25

○ 2007년 상반기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58	19,061,538	41,619	550	458	19,080,984	41,661	0.1
건축부분	359	359	11,280,217	31,421	402	359	11,405,273	31,769	1.11
기계부분	231	231	8,878,479	38,434	258	231	8,900,445	38,530	0.25

○ 2007년 상반기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57	18,956,235	41,479	689	457	20,498,443	44,854	8.14
건축부분	359	359	11,280,217	31,421	487	359	12,062,702	33,600	6.93
기계부분	231	231	8,878,479	38,434	302	231	9,526,421	41,239	7.3

○ 2007년 상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67	19,139,262	40,983	716	467	20,747,087	44,426	8.4
건축부분	359	359	11,280,217	31,421	511	359	12,401,623	34,544	9.94
기계부분	231	231	8,878,479	38,434	310	231	9,818,459	42,504	10.59

○ 2007년 상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7년 상반기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470	467	19,139,262	40,983	763	467	20,131,925	43,109	5.19
건축부분	359	359	11,280,217	31,421	534	359	12,229,319	34,064	8.41
기계부분	231	231	8,878,479	38,434	310	231	9,730,499	42,123	9.6

○ 2007년 8월 13일 / 2007년 8월 20일

공종	2007년 8월 13일				2007년 8월 20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05	501	33,050,487	65,969	516	501	33,090,084	66,048	0.12
건축부분	381	381	42,899,982	112,598	381	381	42,899,982	112,598	0.00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243	243	8,932,931	36,761	0.00

○ 2007년 8월 13일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7년 8월 13일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05	501	33,050,487	65,969	516	501	33,090,084	66,048	0.12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381	381	12,056,813	31,645	0.00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243	243	8,932,931	36,761	0.00

○ 2007년 8월 13일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7년 8월 13일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05	501	33,050,487	65,969	545	501	32,722,093	65,313	-0.99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402	381	12,167,359	31,935	0.92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258	243	8,966,904	36,900	0.38

○ 2007년 8월 13일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7년 8월 13일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05	493	32,992,174	66,921	550	493	32,637,518	66,201	-1.08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402	381	12,167,359	31,935	0.92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258	243	8,966,904	36,900	0.38

○ 2007년 8월 13일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7년 8월 13일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05	492	32,886,871	66,843	689	492	35,699,467	72,559	8.55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487	381	12,885,420	33,820	6.87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302	243	9,596,297	39,490	7.42

○ 2007년 8월 13일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7년 8월 13일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05	502	33,069,898	65,876	716	502	35,914,037	71,541	8.6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511	381	13,259,864	34,802	9.98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310	243	9,889,834	40,698	10.71

○ 2007년 8월 13일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7년 8월 13일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05	502	33,069,898	65,876	763	502	35,000,709	69,722	5.84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534	381	13,022,539	34,179	8.01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310	243	9,800,868	40,332	9.71



○ 2007년 8월 20일 / 2007년 10월 12일

공종	2007년 8월 20일				2007년 10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16	516	36,655,372	71,037	516	516	36,655,372	71,037	0.00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381	381	12,056,813	31,645	0.00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243	243	8,932,931	36,761	0.00

○ 2007년 8월 20일 / 2008년 2월 14일

공종	2007년 8월 20일				2008년 2월 14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16	516	36,655,372	71,037	545	516	36,287,381	70,324	-1.00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402	381	12,167,359	31,935	0.92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258	243	8,966,904	36,900	0.38

○ 2007년 8월 20일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7년 8월 20일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16	508	36,596,568	72,040	550	508	35,992,718	70,851	-1.65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402	381	12,167,359	31,935	0.92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258	243	8,966,904	36,900	0.38

○ 2007년 8월 20일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7년 8월 20일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16	505	36,205,799	71,694	689	505	39,147,941	77,520	8.13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487	381	12,885,420	33,820	6.87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302	243	9,596,297	39,490	7.42

○ 2007년 8월 20일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7년 8월 20일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16	514	36,372,209	70,763	716	514	39,418,046	76,688	8.37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511	381	13,259,864	34,802	9.98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310	243	9,889,834	40,698	10.71

○ 2007년 8월 20일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7년 8월 20일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16	514	36,372,209	70,763	763	514	38,438,714	74,783	5.68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534	381	13,022,539	34,179	8.01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310	243	9,800,868	40,332	9.71

○ 2007년 10월 12일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7년 10월 12일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16	514	36,372,209	70,763	763	514	38,438,714	74,783	5.68
건축부분	381	381	12,056,813	31,645	534	381	13,022,539	34,179	8.01
기계부분	243	243	8,932,931	36,761	310	243	9,800,868	40,332	9.71

○ 2008년 2월 14일 / 2008년 2월 26일

공종	2007년 2월 14일				2008년 2월 26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45	537	38,036,965	70,832	550	537	37,801,106	70,393	-0.62
건축부분	402	402	12,542,780	31,200	402	402	12,542,780	31,200	0
기계부분	258	258	9,386,185	36,380	258	258	9,386,185	36,380	0

○ 2008년 2월 14일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8년 2월 14일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45	534	37,646,196	70,498	689	534	41,134,259	77,030	9.27
건축부분	402	402	12,542,780	31,200	487	402	13,283,542	33,043	5.91
기계부분	258	258	9,386,185	36,380	302	258	10,047,070	38,942	7.04

○ 2008년 2월 14일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8년 2월 14일				2008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45	543	37,812,606	69,636	716	543	41,478,303	76,387	9.69
건축부분	402	402	12,542,780	31,200	511	402	13,670,712	34,006	8.99
기계부분	258	258	9,386,185	36,380	310	258	10,357,227	40,144	10.35

○ 2008년 2월 14일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8년 2월 14일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45	543	37,812,606	69,636	763	543	40,405,851	74,412	6.86
건축부분	402	402	12,542,780	31,200	534	402	13,423,917	33,392	7.03
기계부분	258	258	9,386,185	36,380	310	258	10,266,971	39,794	9.38

○ 2008년 2월 26일 / 2008년 8월 22일

공종	2008년 2월 26일				2008년 8월 2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50	547	37,637,227	68,806	689	547	41,382,980	75,654	9.95
건축부분	402	402	12,542,780	31,200	487	402	13,283,542	33,043	5.91
기계부분	258	258	9,386,185	36,380	302	258	10,047,070	38,942	7.04

○ 2008년 2월 26일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8년 2월 26일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50	548	37,748,724	68,884	716	548	41,683,338	76,064	10.42
건축부분	402	402	12,542,780	31,200	511	402	13,670,712	34,006	8.99
기계부분	258	258	9,386,185	36,380	310	258	10,357,227	40,144	10.35

○ 2008년 2월 26일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8년 2월 26일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550	548	37,748,724	68,884	763	548	40,607,708	74,101	7.57
건축부분	402	402	12,542,780	31,200	534	402	13,423,917	33,392	7.03
기계부분	258	258	9,386,185	36,380	310	258	10,266,971	39,794	9.38

○ 2008년 하반기 / 2009년 2월 23일

공종	2008년 8월 22일				2009년 2월 23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689	689	54,121,483	78,550	716	689	54,710,192	79,405	1.09
건축부분	487	487	14,301,411	29,366	511	487	14,735,984	30,258	3.04
기계부분	302	302	11,937,985	39,529	310	302	12,323,766	40,807	3.23

○ 2008년 하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8년 8월 22일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689	689	54,121,483	78,550	763	689	53,266,877	77,310	-1.58
건축부분	487	487	14,301,411	29,366	534	487	14,470,748	29,714	1.19
기계부분	302	302	11,937,985	39,529	310	302	12,205,050	40,414	2.24

○ 2009년 상반기 / 2009년 8월 12일

공종	2008년 8월 22일				2009년 8월 12일				등락율 (%)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부분	716	716	56,333,754	78,678	763	716	54,869,174	76,632	-2.6
건축부분	511	511	22,689,075	44,401	534	511	22,293,177	43,626	-1.75
기계부분	310	310	13,532,842	43,654	310	310	13,372,758	43,137	-1.18

## 6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구 분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 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7

## 년도별 산재보험료 요율

년도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궤도신설공사
2009	3.4%			
2008	3.6%			
2007	3.8%			
2006	3.4%			
2005	3.1%			
2004	3.3%			
2003	2.9%			
2002	3.3%			
2001	3.4%			
2000	3.7%			
1999	3.6%	3.8%	4.6%	3.4%
1998	2.9%	2.9%	3.9%	3.1%
1997	3.2%	3.1%	4.5%	3.9%
1996	2.8%	2.8%	4.2%	3.7%
1995	2.8%	2.7%	3.8%	3.9%
1994	3.4%	3.9%	4.9%	4.6%

## 8

## 년도별 고용보험 요율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적용시기
2009-02-12	1.17%	0.85%	0.71%	0.69%	0.67%	'09. 2.12이후
2008-02-04	1.17%	0.85%	0.71%	0.69%	0.67%	'08. 2.04이후
2007-01-26	1.17%	0.85%	0.71%	0.69%	0.67%	'07. 1.26이후
2006-03-01	1.17%	0.85%	0.715	0.69%	0.67%	'06. 3.1이후
2005-09-01	1.17%	0.85%	0.71%	0.695	0.67%	'05. 9.1이후
2005-03-01	1.17%	0.85%	0.71%	0.69%	0.67%	'05. 3.1이후
2004-03-05	1.15%	0.84%	0.71%	0.68%		'04. 3.5이후
2003-02-15	1.06%	0.74%	0.59%	0.56%		'03. 2.13이후
2002-02-07	1.25%	0.93%	0.77%	0.74%		'02. 2.7이후
2001-02-05	1.17%	0.92%	0.73%	0.65%		'01. 2.5이후
2000-01-15	1.15%	0.92%	0.74%	0.65%		'00. 1.15이후
1999-03-18	0.90%	0.5%	0.5%	0.5%		'99. 1.15이후
1998-03-18	0.28%	0.33%	0.33%	0.33%		'98. 3.18이후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 고시일('09.2.12)이전

발표기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2004-03-05	2.105%	4.50%
2005-03-01	2.155%	4.50%
2006-01-01	2.24%	4.50%
2007-01-01	2.385%	4.50%
2008-01-01	2.54%	4.50%
2009-01-01	2.54%	4.50%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 고시일('09.2.12)이후

발표기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2005-03-01	1.25%	2.41%
2006-01-01	1.31%	2.41%
2007-01-01	1.40%	2.41%
2008-01-01	1.49%	2.43%
2009-01-01	1.49%	2.43%

구 분		요율(%)		적용시기
		토목공사	건축공사	
2009	하반기	2.30	2.30	'09.8.24이후 공고부터
	상반기	2.30	2.30	'08.8.12이후 공고부터
2008	하반기	2.30	2.30	'08.8.12이후 공고부터
	상반기	2.30	2.30	'08.1.14이후 공고부터
2007	하반기	1.90	1.99	'07.9.19이후 공고부터
	상반기	1.89	2.03	'07. 1이후 공고부터
2006	하반기	1.35	1.42	'06. 9이후 공고부터
	상반기	1.37	1.44	'06. 3이후 공고부터
2005	하반기	1.46	1.54	'05. 9이후 공고부터
	상반기	1.47	1.55	'05. 1이후 공고부터
2004	하반기	1.37	1.46	'05. 9. 1이후 공고부터
	상반기	1.40	1.48	'04. 3. 5결재분 부터
2003	하반기	1.45	1.55	'03. 9. 1이후 입찰공고부터
	상반기	1.48	1.57	'03. 2.13이후 입찰공고부터
2002	하반기	1.63	1.71	'02. 9. 1이후 입찰공고부터
	상반기	1.79	1.87	'02. 2. 7이후 입찰공고부터
2001	하반기	1.91	2.06	'01. 9. 1이후 입찰공고부터
	상반기	1.95	2.11	'01. 2.05이후 입찰공고부터

1 일반공사

① 조달청 안내 참조

- 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 194번

② 요청서

“기 관 명”

수신자 조달청장

(경유) 시설사업국(예산사업관리과장)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

우리부(처, 청)에서 관리·감독중인 아래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중인 총사업비 대상공사로서 기획재정부 “2008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를 조정코자 사전검토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명 :

나. 총사업비 :

다. 물가변동 적용내용

- 1) 도급금액 : 원
- 2) 비적용 대상금액 : 원
- 3) 물가변동 적용대가 : 원
- 4) 지수(품목) 조정율 : %
- 5) 물가변동 경과기간 : 200 . . . ~ 200 . . . ( 일)
- 6) 선급공제액 : 원
- 7) 실조정금액 : 원

- 붙임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1부.  
3. 물가변동 조정율(지수 조정율) 산출표 1부.  
4. 물가변동에 적용한 각종지수의 산정표 1부.  
5. 물가변동 적용대가 집계표 1부.  
6.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1부.  
7.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집계표 1부.  
8.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표 1부.  
9.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일위대가표 1부.  
10.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산출근거 1부.  
11. 계약체결이후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자료 1부.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1부.  
13. 첨부할 자료의 1에서 12까지의 내용이 내장된 디스켓 1매. 끝

## 기 관 장 인

---

협조자  
시행 ( . . ) 접수 ( . . )  
우 /www. . .  
전화 /전송 / /공개

### ③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물가변동 조정 붙임자료 양식

#### 붙임 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

1. 일반 현황										
수요기관	공사명									
계약방법	계약자				낙찰율		%			
기술부서	담당자			전화 :		FAX :				
계약현황	총공사 계약현황					시공중인 공사 계약현황				
	계약일	계약 금액			원	계약일	계약 금액			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물가변동 조정현황	조정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조정방법									
	조정기준일									
	조정율	%		%		%		%		%
	조정금액	원		원		원		원		원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현황										
물가변동 조정율(A)	%		물가변동 경과기간	일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년 월 일		
						입찰 일(기준시점) :		년 월 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년 월 일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원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공정율		예정 공정율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D) (B-C = D)		실행 공정율		%
선금 공제금액 [F] (D×A×E = F)				원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A×D = G)				
경유세 공제금액 [H]				원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 - F - H)		원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서류										
번호	첨부 서류명					부수	비고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 총괄표(프로그램 데이터 포함)						붙임 2 참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프로그램 데이터 포함)						붙임 3~11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및 기타 참고사항						붙임 12, 13 참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										
<p>1. 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자료의 프로그램 내용은 입찰당시(직전 물가변동조정 당시)의 물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 물가변동자료의 오류·변조·위조·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00청(공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p> <p>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와 회계예규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검토한바 00%이상 상승(하락)하였으며,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도 0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귀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합니다.</p>										
						2007년 월 일				
						기관명		(직인)		

- 주) 1. 물가변동 조정 대상공사가 2건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고 합계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2. 물가변동 대상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붙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 수요기관 :
- 물가변동 작성 및 검토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공 사 명 :
- 물가변동 경과기간 :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 : 년 월 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년 월 일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원	·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원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⑦의 공정율을 감안하여 산출
⑦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 공정율	%	· 예정 및 실행 공정표 사본 참조 · 지연 및 실행 공정율 내용 반영
	실행 공정율	%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D)		원	· D = (B-C)
④ 물가변동 조정율 (A)		%	·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원	· G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⑥ 선급 공제금액 (F)		원	· F = (D×A×E)
⑦ 선급지급일		년 월 일	· 선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⑧ 선급 금액		원	· 선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⑨ 선급 지급비율 (E)		%	· E = (선급 금액÷B)×100 * B = 장기계속공사는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⑦ 경유세 공제금액 (H)		원	· 산출근거 첨부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원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H)
첨부 프로그램 데이터			· 첨부 데이터(프로그램명 기재) 참조

- 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 산출 참고자료
- 가)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현재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지연공정율을 제외한 예정공정표의 공정율과 실행공정율중 높은 공정율을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공종의 공사 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나) 물가변동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급을 수령한 금액은 선급 비율 만큼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3. 물가변동 조정 대상공사가 2건이상인 경우 해당금액은 별지에 작성하여 그 합계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4. 물가변동 대상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붙임 3**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표**

■ 수요기관 :

■ 공 사 명 :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①)	기준시점 지수	비교시점 지수	지수변동율 [④=③÷②]	비목군 조정 계수(⑤)[①×④]	비고
			②	③			
<b>① 노무비 합계</b>							
㉠직접노무비(A)							
㉡간접노무비(A')							
<b>② 경비 합계</b>							
㉢국산기계경비(B')							
㉣외산기계경비(B'')							
㉤기타비목군(Z)							
<b>③ 재료비 합계</b>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가스(E)							
㉩농림수산물(F)							
<b>④ 실적공사비 합계</b>							
㉪토목부분실적공사비(G <sup>1</sup> )							
㉫건축부분실적공사비(G <sup>2</sup> )							
㉬기계설비부분실적공사비(G <sup>3</sup> )							
<b>⑤ 제경비 합계</b>							
㉭산재보험료(H)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건설도자퇴장채부담비(K)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보험료(M)							
㉽기타경비(Z)							
순공사원가		1.0000					
지수조정율(K)		지수조정율(K값) = (비목군 조정계수 합계 - 1) × 100 = %					

-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비목군 분류내역을 대상으로 함  
 2. 계수 : '순공사원가' 금액을 '1'로 산정한 후 각비목군이 '순공사원가' 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  
 (계수가 '1'이 아닐 경우 기타경비(Z)에서 조정)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비목군(기타경비) 등 지수 참조  
 4. 지수변동율(비교시점/기준시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 까지 산정

물가변동에 적용한 각종지수의 산정표

<p>■ 수요기관 :</p> <p>■ 공 사 명 :</p>
----------------------------------

**1. 노무비 지수(A) 산정**

근거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직종별 시중노임의 평균치

노임 발표일					비 고
일반공사 직종					건설협회 조사보고서 별첨

\* 노임단가 결정방법 변경에 다른 시중노임 적용시 참고사항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회제4510-2365. 1996. 10. 11)에 의거

가. 기준시점(0000. 00. 00)의 노무비 평균치(A0) =

나. 비교시점(0000. 00. 00)의 노무비 평균치(A1) =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는  $= (A1/A0) \times 100 = 000.00$

**2. 기계경비 지수(B) 산정**

근거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상의 건설장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

1) 국산장비 지수(B') 산정

구 분	국산장비 합계액	기중수	대당 평균단가	비고
기준시점의 기계경비 (0000. 00. 00)				
비교시점의 기계경비 (0000. 00. 00)				



가. 기준시점(0000. 00. 00)의 기계경비 평균치(B'0) =

나. 비교시점(0000. 00. 00)의 기계경비 평균치(B'1) =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는 = (B'1/B'0) × 100 = 000.00

2) 외산장비 지수(B'') 산정 - 매매기준율의 환율을 적용

구 분	환율(\$)	외산장비 합계액	기종수	대당 평균단가	비교
기준시점의 기계경비 (0000. 00. 00)					
비교시점의 기계경비 (0000. 00. 00)					

가. 기준시점(0000. 00. 00)의 기계경비 평균치(B"0) =

나. 비교시점(0000. 00. 00)의 기계경비 평균치(B"1) =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는 = (B"1/B"0) × 100 = 000.00

3. 재료비 지수(C, D, E, F) 산정

근거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해당 기본분류 지수를 적용

1) 광산품 지수(C)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0)	비교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1)	지수변동율(%) (C1/C0) × 100 = %
광산품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C0 ; 0000년 월 지수 적용,

C1 : 0000년 월 지수 적용

2) 공산품 지수(D)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0)	비교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1)	지수변동율(%) (D1/D0) × 100 = %
공산품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D0 : 0000년 월 지수 적용,

D1 : 0000년 월 지수 적용

### 3)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E)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0)	비교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1)	지수변동율(%) (C1/C0)×100=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E0 : 0000년 월 지수 적용,  
E1 : 0000년 월 지수 적용

### 4) 농림수산물 지수(F)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물 지수 (F0)	비교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물 지수 (F1)	지수변동율(%) (F1/F0)×100= %
농림수산물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F0 : 0000년 월 지수 적용,  
F1 : 0000년 월 지수 적용

## 4. 실적공사비 지수(G) 산정

근거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가격

### 1)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지수(G<sup>1</sup>) 산정

구 분	실적공사비 합계액	품목수	품목당 평균단가	비고
기준시점의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0000. 00. 00)				
비교시점의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0000. 00. 00)				

가. 기준시점(0000. 00. 00)의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G<sup>10</sup>) =

나. 비교시점(0000. 00. 00)의 토목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G<sup>11</sup>) =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는 = (G<sup>11</sup>/G<sup>10</sup>) × 100 = 000.00

2)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지수(G<sup>2</sup>) 산정

구 분	실적공사비 합계액	품목수	품목당 평균단가	비고
기준시점의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0000. 00. 00)				
비교시점의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0000. 00. 00)				

가. 기준시점(0000. 00. 00)의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G<sup>20</sup>) =

나. 비교시점(0000. 00. 00)의 건축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G<sup>21</sup>) =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는 = (G<sup>21</sup>/G<sup>20</sup>) × 100 = 000.00

3)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지수(G<sup>3</sup>) 산정

구 분	실적공사비 합계액	품목수	품목당 평균단가	비고
기준시점의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0000. 00. 00)				
비교시점의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0000. 00. 00)				

가. 기준시점(0000. 00. 00)의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G<sup>30</sup>) =

나. 비교시점(0000. 00. 00)의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평균치(G<sup>31</sup>) =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는 = (G<sup>31</sup>/G<sup>30</sup>) × 100 = 000.00

5. 산재보험료 지수(H) 산정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동법 제63조, 시행령 제60조)에서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함.

○ 산재보험료 지수(H)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산재보험료 지수 (H0)	비교시점(0000. 00. 00)의 산재보험료 지수 (H1)	지수변동율(%) (H1/H0)×100= %
산재보험료 지 수			

☆ 산재보험료 지수산식

-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 지수(H0)  
= 계약체결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A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보험요율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 지수(H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요율
- ◎ 산재보험료 지수변동율=(H1/H0)×100= %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가. 당해공사에 대한 기준시점의 산재보험료 지수(H0) 산출식 :  
 나. 당해공사에 대한 비교시점의 산재보험료 지수(H1) 산출식 :

※ 년도별 산재보험요율 표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산재보험요율				
근 거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 산정

- 근거 :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안전관리비 지수(I)

구 분	기준시점(0000.00.00)의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지수 (I0)	비교시점(0000.00.00)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I1)	지수변동율(%) (I1/I0)×10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지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산식

-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0)
  -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계수의 합계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 c + d + e + f + g^1 + g^2 + g^3) \times$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  $a', c, d, e, f, g^1, g^2, g^3$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비목에 대한 계수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1)
  -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계수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times A) \div A0) + (c' \times C1 \div C0) + (d' \times D1 \div D0) + (e' \times E1 \div E0) + (f' \times F1 \div F0) + (g^{1'} \times G^1 \div G^0) + (g^{2'} \times G^2 \div G^0) + (g^{3'} \times G^3 \div G^0)\} \times$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  $a', c', d', e', f', g^{1'}, g^{2'}, g^{3'}$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비목에 대한 계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변동율 =  $(I1/I0) \times 100 = \%$

← 소수점둘째자리 까지

가. 당해공사에 대한 기준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수(I0) 산출식:

나. 당해공사에 대한 비교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지수(I1) 산출식:

※ 년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표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근 거				

## 7. 고용보험료 지수(J)

- 근거 : 총 공사금액 중 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 ○ 고용보험료 지수(J)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고용보험료 지수 (J0)	비교시점(0000. 00. 00)의 고용보험료 지수 (J1)	지수변동율(%) (J1/J0)×100= %
고용보험료 지 수			

### ☆ 고용보험료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J0) = 기준시점 당시의 노무비 지수 (A0)  
× 기준시점 당시의 고용보험료율
- 비교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J1) = 비교시점 당시의 노무비 지수 (A1)  
× 비교시점 당시의 고용보험료율

- ◎ **고용보험료 지수변동율** = (J1/J0)×100= %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가. 당해공사에 대한 기준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J0) 산출식 :  
나. 당해공사에 대한 비교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J1) 산출식 :

### ※ 년도별 고용보험료율 표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고용보험 요율				
근 거				

## 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

- 근거 :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 (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K0)	비교시점(0000. 00. 00)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K1)	지수변동율(%) (K1/K0)×100= %
퇴직공제부금비 지 수			

###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기준시점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요율
- 비교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1) = 비교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비교시점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요율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수변동율 = (K1/K0) × 100 = %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 가. 당해공사에 대한 기준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0) 산출식 :
- 나. 당해공사에 대한 비교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1) 산출식 :

### ※ 년도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율 표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근 거				

## 9.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

- 근거 :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  
(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0)	비교시점(0000. 00. 00)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L1)	지수변동율(%) (L1/L0)×100= %
국민건강 보험료 지 수			

###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기준시점 당시의 국민건강  
보험요율
- 비교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1) = 비교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비교시점 당시의 국민건강  
보험요율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변동율 =  $(L1/L0) \times 100 = \%$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가. 당해공사에 대한 기준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0) 산출식 :

나. 당해공사에 대한 비교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1) 산출식 :

※ 년도별 국민건강보험료율 표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민건강보험 요율				
근 거				



## 10.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

- 근거 :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  
(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0)	비교시점(0000. 00. 00)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M1)	지수변동율(%) (M1/M0×100= %
국민연금 보험료 지 수			

###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기준시점 당시의 국민연금  
보험요율
- 비교시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1) = 비교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비교시점 당시의 국민연금  
보험요율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변동율 =  $(M1/M0) \times 100 = \%$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가. 당해공사에 대한 기준시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0) 산출식 :

나. 당해공사에 대한 비교시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1) 산출식 :

※ 년도별 국민연금보험요율 표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근 거				

## 11. 기타 비목군 지수(Z)

- 기타비목군의 범위는 순공사비 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

### ☆ 기타비목군 지수 산식

-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비목군 계수(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 합계를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
- 비목군수 : 원칙적으로 A, C, D, E, F(5개)이며, A, C, D, E, F 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개 또는 3개 등이 되는 것임.(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목군수가 8개이며,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7개 또는 6개 등이 됨)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g^10 + g^20 + g^30) \div \text{비목군수}$$

$$Z1 = (aA1 + cC1 + dD1 + eE1 + fF1 + g^11 + g^21 + g^31) \div \text{비목군수}$$

가. 당해공사에 대한 기준시점의 기타비목군 지수(Z0) 산출식 :

나. 당해공사에 대한 비교시점의 기타비목군 지수(Z1) 산출식 :

$$\textcircled{\text{C}} \text{ 기타비목군 지수변동율} = (Z1 / Z0) \times 100 = \quad \%$$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begin{aligned} \text{※ } Z0 = & \{ (\text{노무비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text{광산품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text{공산품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text{전력} \cdot \text{수도 및 도시가스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 + (\text{농림수산물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text{토목부분 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 + (\text{건축부분 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text{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기준시점 지수}) \} \div \text{비목군수} \\ & (\text{비목군의 계수가 영('0')인 비목군 수를 제외한 비목군수}) = \end{aligned}$$

$$\begin{aligned} \text{※ } Z1 = & \{ (\text{노무비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text{광산품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text{공산품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 + (\text{전력} \cdot \text{수도 및 도시가스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text{농림수산물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 + (\text{토목부분 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text{건축부분 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 + (\text{기계설비부분 실적공사비 계수} \times \text{비교시점 지수}) \} \div \text{비목군수} \\ & (\text{비목군의 계수가 영('0')인 비목군 수를 제외한 비목군수}) = \end{aligned}$$

**붙임 5**

**물가변동 적용대가 집계표**

- 수요기관 :
- 공 사 명 :

비		목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 제외 대상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성비 및 내용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작업 부산물					
		( 소 계 )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 소 계 )					
	실 적 공 사 비	토목부분실적공사비					
		건축부분실적공사비					
		기계설비부분실적공사비					
		( 소 계 )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비+관급)의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기타 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구조물 안전진단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소 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공사 손해보험료						
	계						
	부 가 가 치 세						
	계 약 금 액						

- 주) 1)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현재로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 2)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 보다 앞서는 공종은 실행 공정율에 의한 공종의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 3) 지연공정율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음을 입증할 사유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이 정당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4)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때에는 예정 및 실행공정표와 이에 근거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제외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7**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집계표**

■ 수요기관 :

■ 공사명 :

비 목	합 계	노 무 비 (A)	경 비				재 료 비				실 적 공 사 비						
			국산 (B')	외산 (B'')	기타 경비 (Z)	계	광산품 (C)	공산품 (D)	전력,수도 도시가스 (E)	농림 수산품 (F)	계	토목 실적 공사비 (G')	건축 실적 공사비 (G'')	기계설비 실적공사비 (G''')	계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담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 타 경 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공사손해 보험료																	
부가가치세																	
계약금액																	

주)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참조



**붙임 9**

**평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일위대가표**

■ 수요기관 :

■ 공사명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합계 단가	경비			재료비				실적			공사비				
					국산 장비 (B)	외산 장비 (B')	기타 장비 (Z)	계	광산품 (C)	공산품 (D)	전력, 수도 도시가스 (E)	공임 수산물 (F)	계	토목부분 실적공시비 (G)	단가	건축부분 실적공시비 (G')	단가	기계설비부분 실적공시비 (G'')	단가

주) 비목군 분류의 항목별 단위당 합계단가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합계단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 수요기관 :

■ 공 사 명 :

구 분	붙 임 자 료
① 물가변동 직전 계약금액 적정성 판단자료	○ 계약서 및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사본 - 물가변동 조정방법 등이 명시된 계약서류 ○ 입찰공고서 사본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산출근거 *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현재 예정공정표의 공정율에 따라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계약금액과 실행 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앞서는 공종은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예정 및 실행 공정표 사본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근거 * 예정공정 및 실행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지연 공종은 포함하여 산출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예정 및 실행 공정표 사본 - 지연공종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서류 사본
④ 선급 공제금액 산출근거	○ 선급 지급조서 사본
⑤ 시중노임 지수변동을 산출근거	○ 대한건설협회 조사 및 발표자료 - 시중노임 변동율 산출근거
⑥ 건설기계가격 변동을 산출근거	○ 대한건설협회 조사 및 발표자료 - 건설기계가격 변동율 산출근거
⑦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 가격정보지 등의 물가자료
⑧ 산재보험요율 변동표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변동표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⑩ 기타비목군 분류 등의 관련자료	○ 기타비목군 분류 등의 관련자료
⑪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이 있는 회계예규, 회계통칙, 질의회신 등의 자료	○ 회계예규, 회계통칙, 질의회신 요약자료
⑫ 기타 참고자료	○ 기타 참고자료

## ① 조달청 안내 참조

- 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 149번

## ② 요청서

“기 관 명”

수신자 조달청장

(경유) 시설사업국(예산사업관리과장)

제 목 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

우리부(처, 청)에서 시행중인 아래 감리용역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중인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2008년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거 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한 총사업비를 조정코자 사전검토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감리 명 :

나. 총사업비 : 원(계약자 : )

다. 물가변동 적용내용

1) 총 계약금액 : 원

2) 비적용 대상금액 : 원

3) 물가변동 적용대가 : 원

- 4) 품목(지수)조정율 :                   %
- 5) 물가변동 경과기간 : 200 . . . ~ 200 . . . ( 일)
- 6) 선급 공제금액 :                   원
- 7) 실 조정금액 :                   원
- 8) 참고사항 :

- 붙임 : 1. 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1부.  
 3. 물가변동 조정율(품목, 지수조정율) 산출표 1부.  
 4. 물가변동 조정 내역 총괄표 1부.  
 5. 물가변동 조정 내역서 1부.  
 6.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물가변동 내역서 1부.  
 7. 물가변동 적용대가 집계표 1부.  
 8.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1부.  
 9.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단가산출 근거 1부.  
 10. 물가변동 적용 자재 등의 조사가격 비교표 1부.  
 11.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집계표 1부.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1부.  
 13. 기타 참고사항 1부.  
 14. 첨부할 자료의 1에서 13까지의 내용이 내장된 디스켓 1매. 끝.

## 기 관 장 인

협조자

시행 ( . . . ) 접수 ( . . . )

우 /www. . .

전화 /전송 / /공개

---

##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동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 1. 지수조정율인 경우

- 비목군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지수를 적용
- 1회 물가변동을 시행하고 2회 물가변동 검토 시는 변경 계약내역서(1회 E/S)를 기준으로 작성(1회 E/S는 당초 계약내역서 기준)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물가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하여 적용
- 최초 계약체결시에 제출한 감리원의 투입계획서를 첨부(공사분 공정표 사본 첨부)
- 조정기준일 이전에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조정기준일 현재 감리원의 투입계획서를 첨부
- 감리대상공사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는 월간보고서 등의 자료첨부
- 조정기준일 현재의 감리원의 투입계획 대비 실 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2. 품목조정율인 경우

-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업체 조사는 예정가격작성시(조사금액 검토)와 동일한 조건 및 방법(업체 등)으로 조정기준일 가격을 산정하여 등락을 검토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물가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하여 적용
- 최초 계약체결시에 제출한 감리원의 투입계획서를 첨부(공사분 공정표 사본 첨부)
- 조정기준일 이전에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조정기준일 현재 감리원의 투입계획서를 첨부
- 감리대상공사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는 월간보고서 등의 자료첨부
- 조정기준일 현재의 감리원의 투입계획 대비 실 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체검토 한 2회 이후 E/S 인 경우는 전회E/S 검토자료 첨부





**붙임 3**

**물가변동 조정 내역 총괄서**

■ 수요기관 :

■ 감리명 :

비 목		계약금액 (A+B)	물가변동 제외 계약금액(A)	물가변동 조정 계약금액(B)	구성비 및 내용
직접인건비	상 주				
	비 상 주				
	소 계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직접경비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상주인건비의 %
	출 장 여 비				비상주인건비의 %
	현지 차량운행비				
	현지 사무원 급료				
	보고서 등 인 쇄 비				
	소 계				
계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손 해 배 상 보 험 료					
계 약 금 액					

- 주) 1) 물가변동 제외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전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입니다.  
 2) 물가변동 조정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후에 계약이행을 할 당초 계약금액과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붙임 5**

**물가변동 조정율(품목 조정율) 산출표**

■ 수요기관 :

■ 감리명 :

구분	단위	물가변동 적용수량	입찰 당시 조사내용		계약내역서의 계약내용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등락 단가(C)	등락율 (D)=(C)/(A)	등락폭		변경(조정) 단가 (F)=(B)+(E)	비고
			단가 (A)	금액	단가 (B)	금액			단가E= (B)×(D)	금액		
1. 직 접 인 건 비	상주	인.월										
		인.월										
		인.월										
		인.월										
		인.월										
		인.월										
	(소 계)											
	비상주	인.월										
		인.월										
		인.월										
		인.월										
		인.월										
		인.월										
	(소 계)											
계												
2. 제 경 비	식											
3. 기 술 료	식											
4. 직 접 경 비	상주감리원의주재비	식										
	출장여비	식										
	현지차량운행비	월										
	현지사무원급료	월										
	보고서 등 인쇄비	식										
	계											
총 원 가[1+2+3+4]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b>합 계</b>								등락폭의 합계액 :	원			
<b>물가변동 조정율(%)</b>			<b>물가변동 조정율(%) = (조정기준일 현재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100 = %</b>									

주) 1. 등락율(비교시점/기준시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붙임 6**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단가 산출근거

■ 수요기관 :

■ 감리명 :

입찰 당시의 조사단가 산출근거	조정기준일 현재의 조사단가 산출근거

**붙임 7**

**물가변동 적용 품목의 조사가격 비교표**

■ 수요기관 :

■ 감리명 :

품명	규격	단위	입찰 당시의 조사가격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	조정기준일 현재의 조사가격	물가변동 적용가격

주) 1) 가격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 수요기관 :
- 감리명 :

구 분	붙 임 자 료
① 물가변동 직전 계약금액 적정성 판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및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사본</li> <li>- 물가변동 조정방법 등이 명시된 계약서류</li> <li>○ 입찰공고서 사본</li> </ul>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산출근거 *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현재 감리투입인원에 따라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계약금액과 실행 투입원이 예정투입원보다 앞서는 공종은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li> <li>-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인·월수 산출서</li> <li>- 공사공정예정표 사본 첨부(공정보고서 등)</li> </ul>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근거 * 예정 및 실행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지연 공종은 포함하여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li> <li>- 지연공종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서류 사본</li> <li>○ 전화 E/S 검토자료 사본</li> </ul>
④ 선급 공제금액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급 지급조서 사본</li> </ul>
⑤ 시중 노임 변동율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협회 조사 및 발표자료</li> <li>- 시중노임 변동율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건설협회</li> <li>· 대한측량협회</li> <li>· 한국건설감리협회</li> <li>·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li> </ul> </li> </ul>
⑥ 자재가격, 환율 변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정보지 등의 물가자료</li> </ul>
⑦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이 있는 회계예규, 회계통칙, 질의회신 등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예규, 회계통칙, 질의회신 요약자료</li> </ul>
⑧ 기타 물가변동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물가변동 관련자료</li> <li>- 관리 감독청의 접수일이 명시된 조정신청서</li> <li>- 기성대가 신청 및 지급현황 등</li> </ul>

## 기타 참고사항

1.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신규품목 현황

기준시점[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부터 비교시점(조정기준일)사이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규품목이 발생된 경우, 조정을 산정 등 그 처리결과 및 방법을 알려 주시고 해당 변경계약서 사본을 통보요망

구분	변경전 계약금액	변경후 계약금액	비고
총 용역 부기금액			
해당차수 계약금액			
계약일자			

2. 선급 및 개산급 지급현황

물가변동 조정신청(발주처 접수일) 전에 지급받은 선급 및 개산급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결과 및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고 아래양식에 따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선급 지급현황	개산급지급현황	비고
총 용역 부기금액			
해당차수 계약금액			
계약일자			
지급금액			
대가신청일자			
대가수령일자			

※ 개산급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등 증빙서류 첨부

3. 기성대가 및 차수준공금액 신청현황

물가변동대상 총 용역금액(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비교시점)과 물가변동신청일 사이에 기성 또는 차수준공 대가를 신청한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목록을 기재하여 주시고 기성물량을 물가변동 적용 물량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려 주십시오

신청 및 지급일자	기성(준공)대가 신청차수	해당차수 계약금액	기성(준공) 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여부	비고

4. 발주처에 접수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접수일이 명시된 신청서)사본과 감리용역 계약서(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명시된 계약특수조건 포함)사본 통보요망

구 분	물가변동 신청일(감리자)	물가변동 접수일(발주처)
일 자		

5. 발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용역계약서 표지 사본 및 계약변경 현황

일 자	총 용역 부기금액	해당차수 계약금액	변경사유





---

---

##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

---

인 쇄 일 • 2009년 12월

발 행 일 • 2009년 12월

발 행 • 조 달 청

작성·정리 •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고임세, 김은라, 윤경수

인 쇄 • 청구디자인